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8 선고 2017가단81961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3,320,623원 및 그 중 71,902,278원에 대하여 2017. 2. 22.부터 2017. 9. 27.까지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대연

별지